

대전광역시 대덕구

구 공보는 공문서 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제2024-39호
2024. 7. 3.(수)

선	기관(부서)의 장
람	

차 례

공 고(2)

- 2024년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안전시행계획 공고(공고 제2024-710호) 1
- 2025년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계획 공고(2차)(공고 제2024-711호) 2

공 략									
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: 대전광역시 대덕구 / 편집: 기획홍보실 ☎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(오정동) ☎ 608-6602

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4-710호

2024년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안전시행계획 공고

「교통안전법」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교통안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, 대덕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였기에 같은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“2024년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안전시행계획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7월 3일

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

1. 공 고 명 : 2024년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안전시행계획
2. 공고기간 : 2024. 7. 3. ~ 7. 17. (15일간)
3. 공고장소 : 홈페이지
4. 공고내용
 - 계획기간 : 2024년
 - 대상지역 : 대덕구 관내
 - 주요내용
 - 제1장 시행계획의 개요
 - 제2장 교통안전 일반현황
 - 제3장 교통사고 현황 및 분석
 - 제4장 2023년 교통안전 추진 실적
 - 제5장 2024년 교통안전 주요업무 추진 계획
5. 열람 및 문의 : 대덕구 교통과 교통행정팀(☎042-608-5262). 끝.

2025년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계획 공고(2차)

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7조 및 「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15조 규정에 따라 「2025년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7월 3일

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

1. 지원 목적

- 「지진·화산재해대책법」 제16조의2에 의하여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을 증진(내진성능 확보)하고, 국민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'지진안전 시설물 인증'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

2. 지원 대상

- 「지진·화산재해대책법」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내에 위치한 민간 소유 건축물
- <공공건축물>을 제외한 건축물(무허가, 불법 증·개축 등 법령위반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)을 대상으로 함.

※ 공공건축물 :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유지·관리하는 건축물을 말한다.

- 1) 중앙행정기관
- 2) 지방자치단체
- 3)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
- 4)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공사·공단

3. 지원 신청 자격

- 지원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등(법인, 단체 포함)*로서 「지진·화산재해대책법」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(국토안전관리원)으로부터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.

다만, 다음의 지방보조금 지원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함.

* 소유자 등(법인, 단체 포함)* :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건축물 관리를 위임받은 자

■ 지방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자(법인, 단체 포함)

- 보조금의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
- 이미 다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재원에서 내진성능평가 비용의 지원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자
- 기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

4. 지방보조금 지원내용 및 범위 등

○ 지원내용

-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 (내진성능평가비의 100%, 인증수수료의 100%)
 - 인증 지원계획 공고일 이전에 실시한 내진성능평가비에 대한 비용도 지원 가능

○ 지원범위·비율·한도 등

지원 범위	지원 비율(%)	최대 지원 한도 금액	비고
계		40,000천원	
내진성능평가비	100%	30,000천원	국비 60%, 시비 20%, 시군비 20%
인증수수료	100%	10,000천원	국비 60%, 시비 20%, 시군비 20%

【 지원 한도금액 산출 근거】

- ① 내진성능평가비 지원한도 금액 : 기준금액 30,000천원×지원비율 1.0 = 30,000천원
- ② 인증수수료 지원한도 금액 : 기준금액 10,000천원×지원비율 1.0 = 10,000천원

5.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제출 기간, 제출 장소 등

- 제출 기간 : 2024. 7. 3. ~ 2024. 7. 18. (근무시간내 09:00~18:00)
- 제출 장소 :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안전총괄과
- 제출 방법 : 직접 방문(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 접수 불가)
 - ▷ 신청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제출(신분증 및 위임장 지참)
- 제출 서류
 - 1)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(붙임1 서식)
 - 2)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추진계획서 1부(붙임2 서식)
 - 3) 주민등록등본(개인) 1부
 - 4)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(법인) 1부
 - 5) 기타 증빙자료(신청서 검토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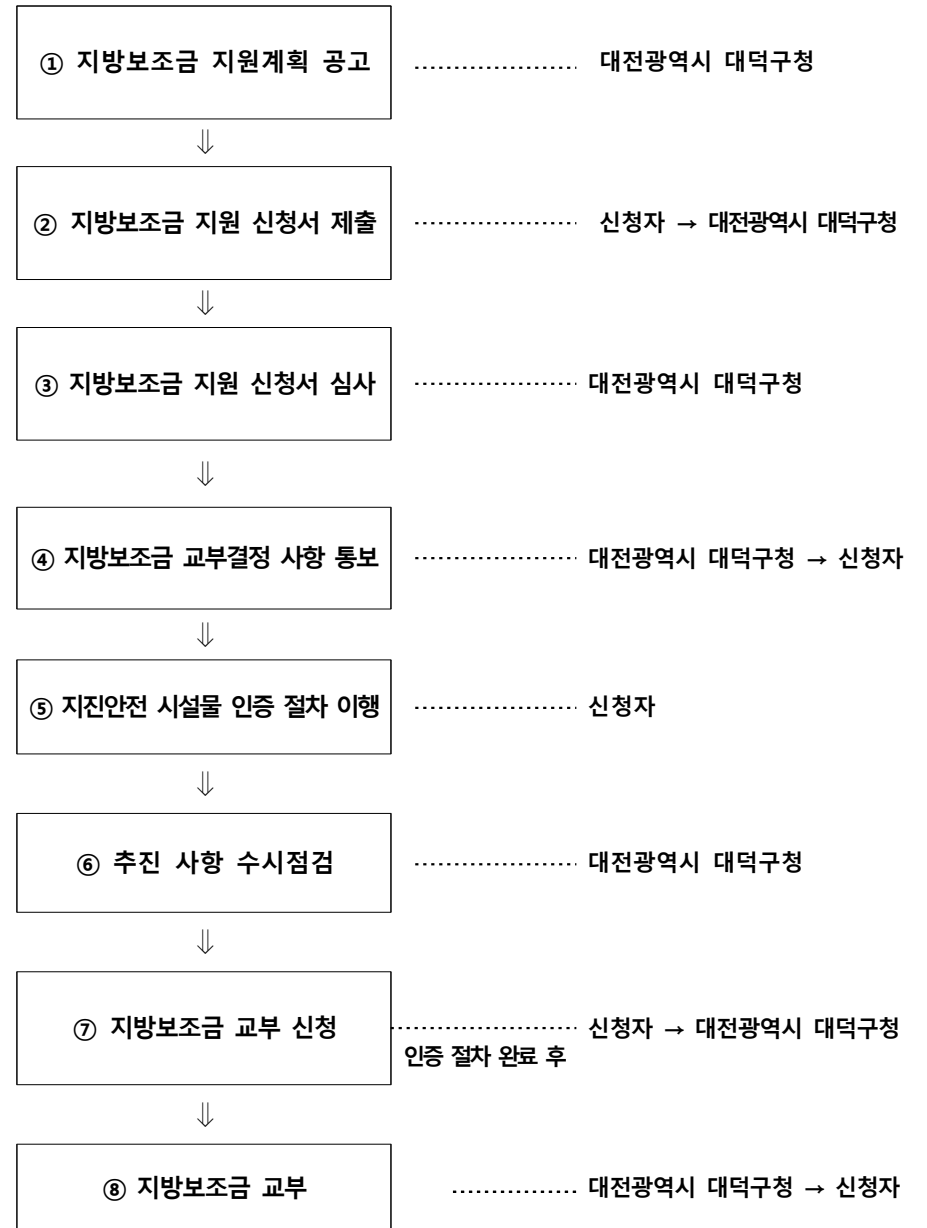
6. 지방보조금 지원기간

- 지방보조금 지원 기간 :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일 ~ 2025. 12. 31.

7. 지방보조금 지원 절차

-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접수순서대로 제출서류를 심사한 후에 “총 지원규모”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
-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사항을 통보를 받은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제출한 「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추진계획」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 완료 한 후에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.
-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사항을 통보한 후에 관련 절차 이행 사항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, 중요 사항(내진성능평가비, 인증수수료, 자부담 금액 등)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.

※ 지방보조금 지원절차



8. 기타 유의 사항

가.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금액 산정시 유의 사항

- 1) 내진성능평가 보조금 지원 신청비용은 행정안전부의 「내진보강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라인」에 의하여 산출되는 금액의 100%를 초과할 수 없음.

◆ 내진보강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은 “내진보강지원센터/정보마당/자료실”에서 다운로드 가능
※ 인터넷 주소 : <http://www.scsr.co.kr>

- 2)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2조 제3항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에 포함하여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도 내진성능평가 비용은 지원신청은 가능하나 최대 지원 한도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.
※ 다만, 정밀안전진단 시행 업체가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하여야만 인증신청이 가능

- 3) 인증수수료 지원 신청비용 산정은 「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」 제6조(별표3)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100%로 하며, 최대 지원 한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.

나. 보조금 지원신청서 등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할 수 있음.

다.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등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.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안전총괄과(☎042-608-5353) 문의.

- ※ 사전 수요조사 결과를 참고로 사업 추진 예정이며, 추후 사업(지원)내용이 변동될 수 있음.

- 붙임 1.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작성 서식 1부
2.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추진계획서 작성 서식 1부.

붙임 1)

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

신청인 인적사항	성 명 (법인·단체명)		생년월일 (법인등록번호/사업등록번호)			
	주 소	(우편번호 : -)				
	연 락 처	유선전화 :	/	휴대전화 :	/ E-mail :	
지진 안전시	대 상 건축물 개 요	건축물 명칭		종 류		
		소 재 지(도로명)				
		건축 규모	(층수)	/ (연면적)	m ²	
		허가일	년 월 일	준공일	년 월 일	
설물인증 추진계획	추진 사항 및 계획	내진성능평가 추진 현황 또는 계획	용역 완료	년 월 일 ~ 년 월 일		
			용역 중	년 월 일 ~ 년 월 일		
			용역 예정	년 월 일 ~ 년 월 일		
		「지진안전 시설물 인증」 추진계획		년 월 일 ~ 년 월 일		
소요금액 (천원)	합 계 (천원)	보조금 지원 신청금액(천원)			자부담 금액 (천원)	
		소계	내진성능평가비	인증수수료		

「지방재정법」제32조의2 및 「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신 청 자 : (인)

○ 첨부서류 : 1.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추진 계획서 1부
2. 주민등록등본(개인 소유자) 1부
3.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(법인 소유자) 1부
4. 기타 증빙자료
※ 신청서 검토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 자료 요청

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

붙임 2)

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추진 계획서

1. 대상 건축물 개요

가. 건축물 명칭, 소재지, 소유자 등

구 분	내 용	
건축물 명칭		
소재지	(새주소)	
소유자 등	성 명	※ 법인, 단체일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을 기재
	주 소	※ 법인, 단체일 경우에는 법인 주소 또는 단체주소를 기재

☞ 소유자 등(법인, 단체 포함)* :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건축물 관리를 위임받은 자

나.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

종 류*	층수(지상/지하)	건축 면적(m ²)	건축 연면적(m ²)

☞ 종류* : 건축법 시행령 별표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기재

다. 건축물의 허가일 및 준공일, 내진설계 적용 여부

허 가 일	준 공 일	내진설계 여부*	
		적 용	미적용
년 월 일	년 월 일		

☞ 내진설계 적용여부* : 해당란에 “○” 를 표기

2. 추진계획

가. 소요 기간 :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일 ~ 2025년 월

☞ 「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절차」 완료시 까지 소요되는 예상 기간을 기재

나. 내진성능평가 추진사항 및 계획

구 분	용역 기간	용역금액 (천원)	용역업체	평가결과*	
				(O, X)	
				성능확보	미확보
용역완료	년 월 일 ~ 년 월 일				
용역 중	년 월 일 ~ 년 월 일				
용역 예정	년 월 ~ 년 월	※예정금액 기재	※기재생략 가능		

☞ (확인사항) 내진성능평가 업체: 건축구조기술사가 소속된 정밀안전진단업체, 건축구조기술사 사무소

※ 「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」 개정(‘21.6.10.)에 따라, 인증 심사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자체 평가서를 ‘건축구조기술사’ 직인이 필요하므로, 내진성능평가 수행 업체가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필수

다. 「지진안전 시설물 인증」 추진 계획

추진계획	인증수수료*(천원)
2025년 월 ~ 2025년 월	※ 납부 예정금액 기재

☞ 인증수수료* : 「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」 제63조(별표3)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기재

3. 지방보조금 신청금액 산출근거

구분	총 소요금액 (천원)	보조금 신청금액 (천원)	자부담 금액 (천원)
계			
내진성능 평가비			
인증수수료			

☞ 작성요령

1) 내진성능 평가비

- ① 내진성능평가비 소요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 경우
 - 보조금 신청금액 : 소요금액의 100% / 자부담 : 없음
- ② 내진성능평가비 소요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
 - 보조금 신청금액 : 지원한도 금액 30,000천원 / 자부담 : 지원한도 금액 초과분

2) 인증수수료

- ① 인증수수료가 1천만원 이하일 경우
 - 보조금 신청금액 : 소요금액의 100% / 자부담 : 없음
- ② 인증수수료가 1천만원을 초과 할 경우
 - 보조금 신청금액 : 지원한도금액 10,000천원 / 자부담 : 지원한도 초과분

붙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안내서 1부. 끝.